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1
----------	-----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의자 : 박은경, 이정애, 이영환,
원병일, 김진희, 이철영,
전용균, 신민철, 장근환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남양주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남양주시민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제5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양주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지원 금품 등을 말한다.
5.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현금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액, 지급기준 및 지

급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경기도가 시에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비 고
재난기본소득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총 30만원 이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 또는 사업장별 총 200만원 이내	
	보육시설 운영자		
	학원·교습소 운영자		
	운수종사자(버스·택시)		
	지역 예술인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비정규직·프리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정해지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민안전관 과장 홍철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